

제 15 장

경쟁정책

제 15.1 조

목적

무역관계에 있어 자유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 행위의 금지, 경쟁정책의 이행 및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양해한다.

제 15.2 조

이행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영업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양 당사국 경쟁당국의 집행 정책은 투명성, 시의 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과 합치해야 한다. 특히, 투명성과 관련해서,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적용면제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가능하게 한다.

제 15.3 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 및 정책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통지, 협의, 기술지원 및 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협력한다.
3. 양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상호 관심이 있는 경쟁 사안에 대해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5.4 조

통지

1.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한 집행 활동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집행 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해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영어로 통지한다.
2. 양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고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통지는 집행 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국의 경쟁법에 따른 행위 및 최종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저해함이 없이, 집행 활동을 관장하는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견해를 고려한다.

제 15.5 조

협의

1. 양 당사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해, 그리고 각 당사국이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자율권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협의를 개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 15.6 조 비밀유지

1.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각각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비밀유지 규칙 및 기준과 부합해야 한다.
2.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비밀로 제공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떠한 실체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5.7 조 기술지원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의 이행과 경쟁 문화의 촉진을 위한 경험 교환 및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기술지원을 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5.8 조

국경 간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자국 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이 소비자 후생 제고를 위해 갖는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통해 협의, 기술지원 및 소비자보호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적절한 사안에 대해 협력한다.
2. 이 조의 어느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재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당국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국의 중요한 이해관계에 합치되게, 자국 소비자보호법의 집행에 있어 다른 쪽 당사국과의 효과적인 협력에 대한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15.9 조

공기업과 지정독점

1. 이 장의 어느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공기업 또는 지정독점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공기업과 지정독점이 각국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양 당사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반경쟁적 관행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 조항은 공기업 및 지정독점에 부여된 특정 공공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제 15.10 조

분쟁해결

어느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23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5.11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1. **반경쟁적 영업 행위**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에 규정된 대로, 경쟁의 방해,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한 효과를 유발한 기업 간 합의 및 기업단체의 결정
- 나.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에 규정된 대로, 지배적 지위의 남용, 또는
- 다. 양 당사국 각각의 경쟁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적인 경쟁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기업 결합

2.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국립 경쟁 보호 및 지적재산 보호 협회 및 통신 분야 민간투자 감독청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

3.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반경쟁적행위 억제법 및 전기 분야의 반독과점

법과 그들의 이행 규정, 그리고

4.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들의 이행 규정, 그리고
 - 나. 페루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 및 불공정경쟁 억제법과 그들의 이행 규정